

공소청 직제 보도참고자료

- 「정부조직법」, 「공소청법」, 「형사소송법」 등 일련의 법 개정을 통해
10. 2. 출범하는 공소청은 기존에 수행하던 수사기능이 폐지됨에 따라, 정부는 전체 정원 10,706명 중 21.4%인 2,294명의 인력을 감원하는 공소청 직제안을 확정하였습니다.
 - 공소청은 소추기관으로서 수사기능 외에 종전에 수행하던 공소제기 여부 결정, 공소유지, 형집행, 범죄수익환수 기능에 집중함과 동시에, 새로운 형사소송법에 따라 수사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부실 수사, 사건 암장 등 수사권 남용을 방지하는 데 주력하여 국가 전체 범죄대응 역량에 공백이 없도록 본연의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 국민주권정부에서 수사·기소 분리를 통한 검찰개혁의 궁극적인 목표는 검찰의 역할과 기능을 감축·폐지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피해를 구제하는 데 있습니다.
- 소추기관으로서 공소유지 기능 강화 필요성
- 현재 「검사정원법」에 규정된 검사 정원(2,292명)은 2014년 법 개정 이후 12년째 동결된 것으로, 특히 2025년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개정 당시 검사 정원이 연동되어 증원되지 않아, 정원 기준 법관 대비 검사 비율(64%)이 역대 최저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 법관 정원이 2029년까지 370명 순차 증원되어 총 100여개 이상의 형사재판부 증설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검사 정원이 연동 개정되지 않아 현재 2개의 재판부를 1명의 검사가 담당하는 실정입니다.
 - 이로 인해 공판검사는 근무일 대부분인 주 4~5일을 법정에 출석하면서 공소유지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지금도 증거기록 검토, 증인 신문 등 재판준비에 필요한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입니다.

- 공판중심주의가 강화되어 공소유지 난이도가 높아지는 추세이고, 향후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로 인해 수사단계에서 이루어지던 실체진실 확정은 일정 부분 공판단계로 미루어질 수밖에 없어,
- 현재의 검사 정원으로는 공소청이 소추기관의 본질적 기능인 공소유지 기능을 충실하게 수행하여 형사사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한계에 봉착하였습니다.

- 법관 정원·형사재판부 수는 지속적으로 확대된 반면, 검사 정원은 '25년 법관 정원 증원 시 연동되어 증원되지 않아, 형사재판 대응을 위한 공판인력 부족
- 1검사가 2재판부를 담당, 주4~5일 공판기일(재판부당 2~3일) 출석으로 인해, 공판중심주의에도 불구하고 증거기록검토, 증인신문 등 실질적인 재판준비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

【최근 10년간 재판부 수, 공판검사 수】 : 10년간 재판부 142개 증가(+32%)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증가율
재판부 수	439	452	482	490	478	490	503	511	513	521	581	32%
공판검사수	249	252	273	270	267	279	303	307	301	299	300	20%

* 비직제 공판부, 고검 항소심 공판부, 수사·공판 병행 검사 모두 합산한 수치

【검사·판사 정원 추이】 : '25년 검사정원법 미개정으로, 판사/검사 비율 역대 최저

개정연도	「검사정원법」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판사/검사 비율
	정원	증가인원	정원			증가인원	
			판사	예비판사	합계		
1995	1,287	300	1,724	210	1,934	560	66.5%
2001	1,587	300	2,074	300	2,374	440	66.8%
2005	1,807	355	2,544	300	2,844	470	68.3%
2007	1,942		2,844(예비판사 정원 통합)				
2014	2,292	350	3,214			370	71.3%
2025	2,292	0	3,584			370*	64.0%

* 2029년까지 판사 370명 증원에 따라 총 100여 개 이상의 형사재판부 증설 예상되어, 공판검사 총원 소요 지속

- 검사 정원은 한정되어 있고 상당수의 인력이 중수청으로 옮겨가야 하는 상황에서, 신속하고 충실한 공소제기 여부 결정, 민생사건의 적체 해소, 새로운 형사소송법을 반영하여 필수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기능 등을 고려하여 이번 직제안으로 공판 인력 확보 및 기능 강화를 모두 실현하는 데 한계가 있었으나,
- 실질적인 공소유지를 위해서는 1검사 - 1재판부 상당의 검사 인력배치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오히려 최소 281명 이상의 검사 정원 증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 검찰 업무의 3분의 1 이상이 수사업무이므로, 검사 정원을 3분의 1 이상 축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 수사인력과 관련하여, '검찰 업무의 3분의 1 이상이 수사업무'라는 주장은 기존 형사부와 인지·합동수사부 검사실에 소속된 인력 전체가 감축되어야 한다는 주장으로 보입니다.
- 그러나 검사실은 직접수사, 보완수사뿐만 아니라, 완결된 처분을 위해 사경 신청 영장 검토, 송치·불송치 기록 검토, 기소·불기소 처분 및 결정문 작성, 범죄수익환수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여 왔습니다.
- 공소청 전환 후 직제·인력 산정을 위한 업무진단 결과에 기초할 때, 검사실에서의 '직접수사 업무비중'을 고려하여 감축이 가능한 검사 수는 80여명 수준이었습니다.
- 또한, 검사 보완수사권의 전면폐지로 인한 범죄대응 역량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사실관계확인 제도는 임의적 방식의 보완수사와 유사한 사건관계인 면담, 전문가 의견청취, 공무소 조회 등을 포함*하고 있고(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
 - *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검찰의 보완수사 세부통계를 분석한 결과 대부분이 실질적인 수사가 아닌 수사보고 작성에 지나지 않아 폐지되어도 무방하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는데, 수사보고는 대부분 판결문 작성, 간이 진술청취, 법리검토 등을 위한 것으로 개편 후에도 검사의 업무로서 당연히 존속되는 것임
- 직접 보완수사가 폐지된 이상, 공백 없는 범죄대응을 위해서는 사경과의 협력·지원 기능도 실질화될 필요가 있어, 제도 개편 후 검사에게 주어진 기능을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에 상응하는 인력이 뒷받침될 필요가 있습니다.
- 수사권이 폐지됨에 따라, 수사·기소 분리 이후 수사기관이 검사가 수행하던 보완수사와 같은 수준의 보완수사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보완수사 필요사항을 세심하고 충실하게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요구하여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 나아가 이번 직제안에서는 최근 부실 처리, 사건 암장 등 수사기관의 수사권 남용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기존 인력의 한계로 실질적인 검토에 한계가 있었던 불송치 사건을 전담하여 검토하고, 사실상 사문화된 직무배제·징계요구권을 일관되고 예측 가능한 기준에 따라 행사할 수 있는 전담부서도 마련하였습니다.

□ 민생사건 신속·충실 처리를 위한 인력 증원 필요성

- 지금도 사직자·휴직자의 증가, 특검 파견, 과거 일시적인 검사 선발규모 축소 등의 여파로 사건을 처리할 검사가 부족한 상황에서 (1인당 미제는 4년전 대비 3.1배가 증가하였고, 전체 미제도 1.7배가 증가하였습니다),

【최근 5년간 실근무 검사 인원 및 미제 현황】

실근무 인원	'22. 2.	'23. 2.	'24. 2.	'25. 2.	'26. 8.	4년 전 대비
	1250명	1169명	1127명	1173명	964명	-22.9%
미제건수	'22. 12.	'23. 12.	'24. 12.	'25. 12.	'26. 7.	4년 전 대비
1인당	53.9건	63.9건	67.7건	117.3건	221.4건	+310.8%
전체	51,839건	57,303건	64,546건	96,256건	141,696건	+173.3%

-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검사정원을 3분의 1 이상 감축하고 관련 기구·조직을 감축할 경우, 민생사건의 처리·검토·결재를 담당할 검사가 부족하여 사건 적체·처리 지연이 심화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 공소청 직제는 종전 검사실의 수사인력은 물론 전국 67개 수·조사과를 전부 폐지함으로써 전체 정원의 21.4%를 감축한 것으로, 공소청의 기능수행을 위한 필요최소한의 규모입니다.
- 또한, 검사실의 수사·기소, 공판부의 공소유지 기능 외에도, 검찰청은 수사기관의 사건을 접수받아 공소를 유지하고 확정된 재판을 집행하는 소추기관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 송치사건 접수, 압수물 보존, 자유형·재산형 집행, 불출석 피고인 검거 등 공판대응 등 검사사무 행정 기능과 범죄수익환수 등의 책무를 수행하여 왔고, 이와 같은 기능은 공소청 전환 후에도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이 완성될 수 있도록 유지·강화되어야 하는 기능입니다.

【형사사법절차에서 검사사무 행정인력의 업무절차도】



주요업무	부서명	형사법무직 업무 개요
검사사무 행정	총무과	인사, 예산, 징계, 기획, 복무, 영치, 특사경 등 기관 운영 총괄
	사건과	사건 접수, 보관, 배당, 증거품 보존, 이동, 대출 등
	집행과	벌금 조정, 즉결, 과태료, 수납, 추징, 사회봉사, 재산형 미납자 검거 등
	공판과	보석, 형사보상, 불출석피고인, 형집행정지, 자유형 미집행자 검거 등

- 법무부는 10. 2. 시한 내 정상적인 출범을 위해 관계부처와 원팀으로 직제, 예산,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개선, 관계법률 및 하위법령 정비 등 산적한 과제를 차질 없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 공소청 직제를 포함하여, 법무부는 국민주권정부의 검찰개혁이 성공하기 위해 공소청이 주어진 역할을 수행하는 데 한 치의 빈틈이 없도록 계속하여 노력하겠습니다.